

# 일반공급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0.06.04.(목)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청약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PC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li> <li>스마트폰 : 구글스토어 및 애플스토어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청약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PC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li> <li>스마트폰 '청약Home' 앱</li> <li>방문접수 : 인터넷청약 불가한 신청자(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 견본주택 특별공급 방문접수(신청서류 미비 시 방문접수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출입 시 동반출입은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li> </ul>
	2순위	2020.06.05.(금) 08:00~17:30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0.06.10.(수)</li> <li>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0.06.11. (목) ~ 2020.06.15.(월) [5일간] (10:00~17: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li> <li>※ 당사홈페이지(www.더삼송도센터내.kr)에서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li> <li>※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0.06.22.(월)~2020.06.26.(금) [5일간] (10:00~17: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li> </ul>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5.21.(목) 현재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유주택자도 가능)</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li> <li>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외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li> <li>전용면적 85㎡ 이하 1순위 청약자 전환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함.</li> <li>전용면적 85㎡ 초과 1순위, 전용면적 관계없이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li> <li>접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후에 입력해야 함.</li> <li>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서 당일 영업시간 내 정정 신청을 해야 함.</li> <li>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li> <li>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li> <li>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li> <li>부적격 청약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 1년</li> <li>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li> <li>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li> </ol>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li> <li>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 총액 시 청약신청 가능</li> <li>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 총액 시 청약신청 가능</li> <li>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총액 기준 : 청약신청 전까지 총액 시 청약신청 가능(단, 동일 주택규모)</li> </ul>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적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li> </ul>

##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 자격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5.21.(목)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li> </ol>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8.05.21.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li> </ul>
			전용면적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첨제 100%</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5.21.(목)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li> </ul>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주택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적 용 기 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ol>                     가)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폭들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나)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폭들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li> <li>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인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li> <li>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된다.</li> </ul> </li> </o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가점 산정기준 (일반공급)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유주택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li> <li>-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li> <li>-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li> <li>-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li>※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